

February 03, 2020

Legal Update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등 개정 상법 시행령의 시행

지난 2019년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이하 “개정 상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29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조기 창출방안” 중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i)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고, (ii) 임원 후보자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iii)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개정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개정 상법 시행령은 (i)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와 관련하여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ii)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참조)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회사에도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개정 상법 시행령으로 인해 사외이사 인력풀이 작아져 오히려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상기 규정은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바로 적용되므로(개정 상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상당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될 수 없어 교체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자격요건은 새로이 사외이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가 곧바로 그 직을 상실하지는 않으나 만일 개정 상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선임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임기 중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상장회사 임원 후보자 관련 공시 강화 (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개정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그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종래 제공되어 온 자료에 더하여 (i)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ii)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iii)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유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상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되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20년 1월 29일 고시하여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증발공규정”)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및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제공하는 참고서류에 이사 선임의 경우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이사회의 추천사유, 직무 수행계획(사외이사의 경우)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상법 시행령이 규정한 이사 후보자 관련 사항 이외에 위와 같이 개정 증발공규정이 규정한 사항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 (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개정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면서, 다만 상장회사가 실무상 주주총회 2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소집 통지·공고 전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1주일 전 당해 서류를 전자문서 발송 또는 회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 상법 시행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개정 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2020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작성 기간을 조율하는 등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주주총회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개정 상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상법 시행령은 주주총회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유일하게 본인 확인 방법으로 인정되던 공인인증서에 의한 방법에 더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인증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등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나아가 전자투표를 한 주주도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회사가 전자문서(또는 주주의 동의를 있는 경우 전화번호 등)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등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한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 상법 시행령은 주주총회 등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도 전격적이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시행령과 함께 상기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의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른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역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송창현
파트너변호사

☎ 02-316-4010

✉ chsong@shinkim.com



김병태
파트너변호사

☎ 02-316-4038

✉ btkim@shinkim.com



이수균
파트너변호사

☎ 02-316-1630

✉ sklee@shinkim.com



백상미
파트너변호사

☎ 02-316-4226

✉ smba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 판교 · 베이징 · 상해 · 호치민 · 하노이 · 자카르타
